

(앞면)

노란우산 가입(희망)장려금 지원 신청서

□ 지방자치단체(시행기관)명 : _____

□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

본인은 노란우산 가입(희망)장려금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귀회에 동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며, 법령상 의무 및 지원 이력 관리를 위해 정부기관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| | | | |
|--|---|---------|---|
| 1) 수집·이용 목적 : 장려금 지원 이력 관리 및 지방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 | | | |
| 2) 수집·이용 항목 | | | |
| 계 약 자 명 | | 생 년 월 일 | |
| 사 업 체 명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사업장 주소 | | 사업개시일 | |
| 연매출액 | 원 | 상시근로자 수 | 명 |
| 3) 보유·이용 기간 및 근거 법령 : 계약 종료 후 5년간 이용 및 보유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9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| | | |
| 4) 동의 거부시 불이익 : 위 수집 항목은 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으로 미동의시 지원 불가합니다. | | | |

- ※ 중도해약 시 장려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며, 장려금 수급자가 기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,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.
- ※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, 예산계획 및 예산소진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.
- ※ 사업장 이전 시 통지 의무사항 확인

장려금은 지원사업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원되므로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. 따라서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며, 동 기간 내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장려금 수령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이전 사실(필요시 사업장 이전일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본인 : _____ (인)

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

<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>

- 지원대상 :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(신규가입자)
 - ※ 서울시, 서울 영등포, 서울 동작, 서울 도봉, 서울 서대문, 서울 금천(예정) 강원도, 인천시, 인천 부평, 인천 계양,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
 - ※ 인천시는 '19.1월 이후 공제가입 소상공인
 - ※ 인천부평은 24.1.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, 인천계양은 '21.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, 인천중구는 '21.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
- 신청방법 : 가입청약 시 신청하거나,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(단,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, 30일 초과시 지원 불가)
 -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재무제표 등
 - 대체가능서류 : 사업자등록증(간이과세자), 면세수입금액증명원(면세사업자)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무등록 소상공인), 주택임대차계약서(신규 주택임대사업자)
- 지원방법 :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던 연복리 이자를 지급
 -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, 부금 미납시 지원되지 않음
 - 임의해지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
- 지원기간 :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* 인천, 인천부평, 인천계양,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지원
- 유의사항 :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,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며,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까지만 지원
 - ①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
 - ② 지원기간 중 폐업·사망·퇴임 등 공제금지급(간주해약 포함)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※ 추가 유의 사항은 뒷면 확인

노란우산 가입(희망)장려금 지원사업 안내

□ 사업개요

-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(희망)장려금을 지원

<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 >

| 지자체 | 지원대상 (연매출) | 지원 금액 (월) | 최대지원 금액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광 역 | 3억원 이하 | 서울시 | 2만원 24만원 |
| | | 부산시 | 2만원 24만원 |
| | | 대구시 | 2만원 24만원 |
| | | 인천시 | 2만원 24만원 |
| | | 광주시 | 2만원 24만원 |
| | | 대전시 | 3만원 36만원 |
| | | 울산시 | 1만원 12만원 |
| | | 세종시 | 2만원 24만원 |
| | | 경기도 | 1만원 12만원 |
| | | 충청남도 | 1만원 12만원 |
| | | 경상북도 | 2만원 24만원 |
| | | 제주도 | 2만원 24만원 |
| | | 전남 내시군 | 2만원 24만원 |
| | | 경남 내시군 | 2만원 24만원 |
| 강원 내시군 | 1만원 12만원 | | |
| 충북 내시군 | 1만원 12만원 | | |
| 전북 내시군 | 1만원 12만원 | | |

| 지자체 | 지원대상 (연매출) | 지원 금액 (월) | 최대지원 금액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기 초 | 3억원 이하 | 충남 당진 | 2만원 24만원 |
| | | 충남 보령 | 2만원 24만원 |
| | | 인천 부평 | 1만원 12만원 |
| | | 인천 중구 | 2만원 24만원 |
| | 제한없음 | 인천 계양 | 1만원 12만원 |
| | 10억원 이하 | 경기 광명 | 2만원 24만원 |
| | | 서울 영등포 | 1만원 12만원 |
| | | 서울 동작 | 1만원 12만원 |
| | | 서울 도봉 | 1만원 12만원 |
| | | 서울 서대문구 | 1만원 12만원 |
| | | 서울 금천구(예정) | 1만원 12만원 |
| | | 경남 밀양(B) | 3만원 36만원 |
| | | 전남 여수(B) | 1만원 12만원 |

※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,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

-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상기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
 - ※ 서울, 서울 영등포, 서울 동작, 서울 도봉, 서울 서대문, 서울 금천(예정), 강원도, 인천, 인천 부평, 인천 계양,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
 - ※ 인천시는 '19.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
 - ※ 인천 부평구는 '24년.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

- ※ 인천 계양구는 '21.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
- ※ 인천 중구는 '21.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
- ※ 소상공인 요건(상시종업원 수) : 5명 미만
 - 단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: 10명 미만

□ 지원방법

-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
- 임의해지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지원기간 : 가입일로부터 1년(최대 12회)

※ 인천, 인천부평, 인천계양,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

□ 신청방법

-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,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자체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(단,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)

-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: 부가세증명원, 재무제표 등
* 대체 가능서류

사업자등록증(간이과세자), 면세수입금액증명원(면세사업자)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무등록 소상공인), 주택임대차계약서(신규 주택임대사업자)

□ 신청문의 및 제출처

- 노란우산 콜센터 ☎1666-9988 (서류제출 FAX : 02-3780-0980 또는 E-MAIL : kbizhope@kbiz.or.kr)
- 금융기관 가입창구, 공제상담사, 온라인신청

□ 유의사항

-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, 부금 미납시 지원되지 않음
-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(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) (강원도의 경우,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,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)
-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,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
- 공제금(간주해약환급금)지급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,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(전남 여수의 경우, 2년 내로 임의 해약시 장려금 미지원)
-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(간주해약 포함)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지원함
-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, 동일 **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장)**로 재가입하여 신청시 미지원
- 서울, 서울 영등포, 서울 동작, 서울 도봉, 서울 서대문, 서울 금천(예정), 대구, 인천, 인천부평, 인천계양, 인천중구, 강원,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았자(주민번호기준) 신청시 미지원
-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,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
-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,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